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0
----------	-------

제출년월일 : 2003. 11. 1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마을하수도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마을하수도를 포함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지침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하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진제정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하수도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를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에 포함·명시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호, 안 제8조제1호).
- 나. 하수도사용요율을 하수도사업원가를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효율적용에 있어서는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으로 구분하였고, 하수도요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업종을 5종류에서 4종류(산업용을 영업용에 포함)로 조정하고, 업종별 단계를 일부 조정하여 수도요금체계와 동일체계로 조정함(안 별표 1, 안 별표 1-1).

파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제14조제2항제2호중 “제8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8조제1항제3호”를 “제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5호중 “법 제24조”를 “법 제42조”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1-1]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2004년 2월 개량한 사용량(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소 관 실·과·소		하수도과(☎940-4838)
입 안 자	하 수 도 과 장	김 홍 식
	하수행정담당	윤 승 현
	담 당 자	정 정 선

[별표 1]

하 수 도 사 용 요 율 표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단가(원)		비 고
		비처리구역	처리구역	
가 정 용	0~20	160	200	
	21~30	200	260	
	31이상	300	390	
업 무 용	0~20	220	280	
	21~50	240	310	
	51~100	280	360	
	101~300	300	390	
	301이상	330	420	
영 업 용	0~30	380	490	
	31~50	420	540	
	51~100	460	590	
	101이상	550	710	
대 중 목욕탕용	0~500	220	280	
	501~1000	290	370	
	1,001~2,000	330	420	
	2,001이상	360	460	

주) 처리구역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마을하수도 포함)

비처리구역 :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등으로서 10m² 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 유공단체
업 무 용	1.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 사설소화전 3.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새마을금고·농협·수협·축협의 중앙회 및 지 사무소
영 업 용	1.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여인숙 제외), 유기장, 노래방 2.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음식점,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불룩제조업, 도축장, 제빙냉동, 청량음료제조업, 식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 화공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기타 유사업종 등 3. 금융기관,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4.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5.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6.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태
대중목욕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u>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개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 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u> 2. (생 략) 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 시장의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따 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u>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u> 2. ~ 6. (생 략) 제14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생략) ②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 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 공무원의 화 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생 략)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u>제8조제1항제2호</u> 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u>제8조제1항제3호</u> 의 규정에 의 한 신고량 ③~ ④ (생 략)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장 또는 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 14. (생략) 15. <u>법 제24조</u>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 과 및 징수	제7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 ----- -----, ----- 1. <u>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차집관거 상의 중개펌프장</u> ,----- ----- 2. (현행과 같음) 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 ----- -----, ----- 1. <u>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u> 2. ~ 6. (현행과 같음) 제14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제9조제1항제2호</u> 의 ----- 3. ----- ----- <u>제9조제1항제3호</u> 의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권한의 위임)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법 제42조</u> 의 ----- -----

하수도사용요금표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단가(원)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단가(원)	
					비처리구역	처리구역
가정용	1~10	67	가정용	0~20	160	200
	11~20	77		21~30	200	260
	21~30	88				
	31~40	111		31이상	300	390
	41~50	130				
	51이상	166				
업무용	1~20	91	업무용	0~20	220	280
	21~50	108		21~50	240	310
	51~100	137		51~100	280	360
	101~300	171		101~300	300	390
	301이상	195		301이상	330	420
영업용	1~30	130	영업용	0~30	380	490
	31~50	151		31~50	420	540
	51~100	192		51~100	460	590
	101이상	242		101이상	550	710
목 탕 용	1종	1~500	대 중 목욕탕용	0~500	220	280
		501~700		501~1000	290	370
		701~1000		1,001~2,000	330	420
		1001이상		2,001이상	360	460
	2종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산업용	1㎡당	105				

하수도사용입종별구분표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	
업종	구분내용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정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천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 유공단체
업무용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포함) · 학교 · 정당 ·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전용전에 의한 철도용,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비영리수영장,교회,사관,국·공립대학 부속병원(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체의 연구기관 · 급수법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 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업무용	1.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 사설소화전 3.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업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새마을금고·농협·수협·축협의 중앙회 및 지 사무소

행		정	
영 업 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실,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 (상가포함) ·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음식점 · 학원(도서관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포함)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살장, 정육업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고(고압가스제조업포함)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제소, 목공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등이 시행으로 인한 칠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밀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1.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여인숙 제외), 유기장, 노래방 2.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음식점, 시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불룩제조업, 도축장, 제빙냉동, 청량음료제조업, 식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 화공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기타 유사업종등 3. 금융기관,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4.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5.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6.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태
	1층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대 중 목 욕 탕 용
	2층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설소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